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57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이재관 · 윤준병 · 송재봉
문진석 · 박용갑 · 정준호
강준현 · 이상식 · 황명선
이재정 · 이정문 · 송옥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동물보호센터 등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동물 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자는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 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 사용의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101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 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생 략) 2. ~ 9. (생 략) ② ~ ⑤ (생 략)	<u>제37조의2(동물보호센터 등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자는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제101조(과태료) ① ----- ----- ----- -----. 1. <u>제3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u>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